

세인 소식지 www.seincustoms.com 문의사항

박재호관세사 T/02-6011-3026 메일/jhpark9@esein.co.kr

2016.11.02

'세관장확인 생략 수출입자 공고' 안내

1. 공고 이유

관세청은 <u>특정 요건을 갖춘 수출입자에 대한 세관장 확인을</u> 생략하여 통관 절차 상의 불필요한 지체를 방지하고자 '세관장확인 생략 수출입자'를 공고하였습니다.

2. 관련 법령 및 대상 수출입자

관련 법령	대상 수출입자
전파법	 ○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○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○ 「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
전기용품안전관리법	 ○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○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○ 「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교시」제7조의2에 따리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
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	 ○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○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○ 「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제7조의2에 따리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
화학물질관리법	○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<u>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</u> ○ 「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제7조의2에 따리 <u>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</u>
방위사업법	○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